

# 훼손된 GB의 공원녹지 복구를 위한 제도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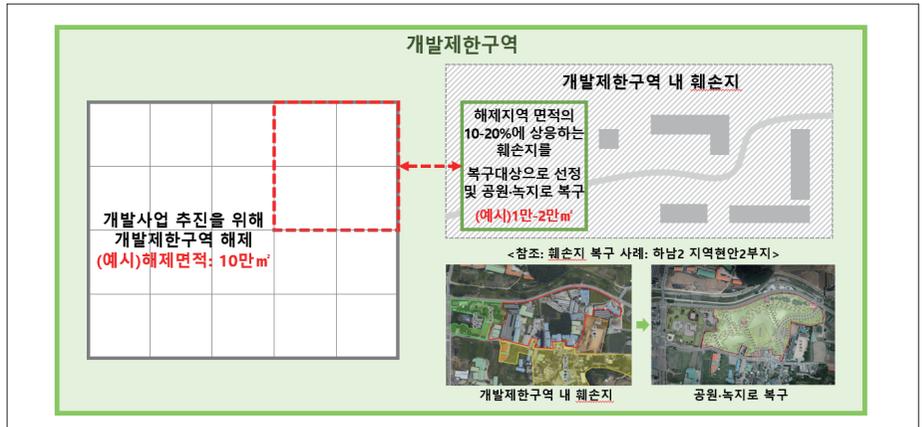
추진부서 | 경기도 공간전략과 ☎ 031-8008-6165

## 개선배경



- GB 해제사업 시 사업시행자는 해제면적의 10~20%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공원·녹지로 복구하여야 하나, 복구대상지 부재 등을 사유로 법적 최소 수준(10%)\*으로만 복구하거나, 보전부담금\*\* 대체 납부 등으로 개발이익의 도비 환수 미흡
  - \* '09~'19 훼손지 복구사업(37개 사업 : 복구사업 25건, 보전부담금 12건) 중 평균 복구비율 11%
  - \*\* 보전부담금은 균형발전특별회계(국비)로 귀속되며, 국비 납부액 대비 도 지원액은 33.4%('17~'21, 납부액 5,700억원/지원액 1,900억원) 수준으로 도의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 효과 미미

## 〈 훼손지 복구계획 예시 〉



☞ 보전부담금을 지양하고, 3기 신도시에 대해 복구면적을 15%이상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, 법령개정을 통해 복구대상지 확대를 추진

## 개선내용



### 개선 전

훼손지 복구 대상지는 '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거나, 개발제한구역내 장기미집행공원이 대상'으로 한정.



### 개선 후

복구대상지를 '대(塿)·공장용지·창고용지 및 잡종지' '백두대간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' '불법 물건 적치지역'을 추가하여 확대

## 추진과정



- '20. 8. 제도개선 방향 보고
- '21. 2. / 4. 국토부 회의 및 방문 건의
- '22. 5.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입법(정부) / 6.10 개정 / 12.11. 시행  
훼손지 복구계획 시행령개정(안) 마련 및 개정 건의(공문)
- '22.12.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시행

## 개선효과



-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 보전하고, 불법 적치물 정비를 통한 효과적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가능해지고, 광고산에서 군포 수리산, 부천 성주산 등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 등 주요 녹지축을 복원할 수 있는 실행력이 확보될 것임
  - 또한, 훼손지 복구사업 확대를 통한 도시민을 위한 공원녹지가 확보\*될 것으로 기대됨
- \* 참고로,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GB해제 사업(약 34km<sup>2</sup>)에 대한 해제조건으로 GB내 훼손지 약 5km<sup>2</sup>를 공원녹지로 조성예정

### 〈 00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현황 및 복구계획 조감도 〉

